전임교원 학술활동지원 사업 내규

(제정 2015.3.1., 최종 개정 2023.7.1.)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명지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학술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전임교원 학술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교원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전임교원 학술활동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논문, 저서, 공연·발표·대국, 전시·설계·디자인의 학술활동 지원 (변경 2017.3.1.)
 - 2.영어논문 작성 지원
 - ②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3조(지원 기준 및 분야)** ①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세부 기준 및 분야는 [별표 1]지원 분야별 지원 기준표에 따른다. (변경 2017.3.1.)
 - ②교내연구비로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매년 수시로 업적 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 (Myiweb)에 의해 출력된 소정의 내역서와 학술활동 업적물 및 관련 자료를 교원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7.3.1.)
 - ②영어논문작성 지원은 [별지서식1]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와 교정 전•후 논문을 교원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시기 및 방법) ①당해 학년도 학술활동실적을 합산·평가하여 차학년도 1학기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어논문작성 지원은 수시로 접수·지급 한다. (변경 2017.3.1.)
 - ②교수업적평가 및 관리 규정의 연구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적 승인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 ③퇴직 및 면직 등의 사유로 선 지급할 경우에는 전년도 산출된 기준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의원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 변경 2023.7.1.)
- **제6조(반환)** 지원금을 지급 받은 전임교원은 지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즉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한) ①제2조 제1항 1호는 업적물 발생일(게재일, 발행일, 발표일 등) 기준으로 1년 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②제2조 제1항 2호는 교정의뢰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제6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2회 이상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업적물 인정일이 2017년 2월 28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②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할 사업 발생시 교수성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학술활동지원금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학술활동지원금 지급시부터 적용한다.

부 최

이 내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7.1., 2016.1.1., 2016.10.1., 표전문개정 2017.3.1., 2019.9.1.)

지원 분야별 지원 기준표

1. 지원 분야

지원 분야	구 분	유의 사항	
논문	교수업적평가및관리규정 [별 표2-1]의 논문 항목	■ 지원 제외 1)Thomson사에서 제공하는 SCI급 목록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목록에 있지 아니하는 저널(논문집)에 게재한 논문(단, 국제 일반학술지 제외) 2)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받아 수행한 논문 3)국내 전문 학술지, 일반 학술지, 대학 논문집 등에 게재한논문 4)Myiweb에서 검증완료가 되지 않는 논문 5)외부인증기관제출 자체평가보고서와 강의평가 학과순위상위20% 항목	
저서	교수업적평가및관리규정 [별 표2-1]의 저서 항목	■ 별도의 책임(참여)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본다. ■ 지원 제외 1)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받아 간 행한 저서(출판부 출간 포함) 2)전문교양서적 미만의 저서, 신간이 아닌 개정판 또는 증 보판 3)논문모음집, 연구보고서 등의 저서 4)ISBN이 없는 저서	
공연,발 표,대국	교수업적평가및관리규정 [별 표2-1]의 공연,발표,대국 항 목	4), 7 当工 美 つ/ 百丁 包含/	
설계, 디자인, 전시	교수업적평가및관리규정 [별 표2-1]의 설계, 디자인, 전시 항목	1)우리 대학교(부설연구소 등)의 주관으로 개최한 전시, 행사발표, 공연 등 2)총사업비의 50%이상을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하여 개최한 전시, 행사발표, 공연 등	

2. 지급 기준

- 가)당해 학년도 배정된 학술활동지원금 총액을 개인별 학술활동(필수연구업적)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함.
- 나)지급 시기 및 방법 : 당해학년도 학술활동실적(1년간의 실적)을 합산·평가하여 차학년도 1학기 말에 아래와 같은 산출방식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산출 방식

■개인별 지원 금액 해당학년도 지원금 총액 X 전체 교수 지원금 총액

※ 개인별 지원금 총액은 [별표2] 지원 분야별 지원내역표에 따라 산출함

3. 영어논문 작성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신청 자격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단독저자 및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지원 분야	■SCI, SSCI, A&HCI, SCI-expanded급 게재 영어논문	최대 250	
유의 사항	 ■ 지원금액은 세금별도이며, 초과비용은 교수 개인 부담임. ■ 교정처는 교내 회화전담교수 또는 기타 관련 전문 컨설트 회사여야 함. (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회사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의무 사항 - 관련 전문 컨설트 회사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개인 및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제외) 전표를 제출 -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3개월 이내 논문제목, 저자명, 학회지 명칭이 기재된 논문 접수 확인서를 교원인사팀으로 제출(미제출자는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2][신설 2019.9.1., 변경 2020.5.1., 2021.12.1.]

지원 분야별 지원 내역표

1. 학술지 논문

	구 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			단독(n=1)	공동(n≥2)		
분야			(A)	책임저자	책임저자	공동저자
				(r≤2)	(r>2)	0 0 7171
	2020.1.3. 이전	SCI	3,500			
	2020.1.3. 의전	SCI-E	2,100			
국 제	2020.1.3. 이후	SCIE	3,000			
저 명	SSCI, A&HCI		10,000]		
학술지	SCOPUS		1,500			
	TOP JOURNAL		교수성과위원회			
	(SCIENCE, NATURE 등) 논문		에서 별도심사			
국 제	SCI-E급(Proceeding)		600	$A \times 0.7$	$A \times 1.4/r$	$A \times 0.3 \times 1/(n-1)$
일 반 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6 0 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계열	1,300			
국 내	등재학술지	이공계열	700			
지 명 지 명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인문사회계열	500			
학술지	등재후보지급	이공계열	300			
	(바둑학과)					
유의 • 교수업적 평가 및 관리규정 [별표2-1] 교수업적자체평가표(연구영역) 공통사항		통사항을 적용하되				
사항	사항 지원급 지급 기준은 논문 권(호),페이지수가 나온 게재일로 함.					

2. 저서

	구 분	가중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 분야			단독(n=1) (A)	공동(n≥2)			
				공동저자	공동(책임)	공동(참여)	
					저자	저자	
저서 역서 편서	전문 학술 서적 또는 번역서, 문학작품(단행본저술,장편소설)	401~450	2,000		$A \times 0.7$		
		301~400	1,500	A×(1/n)			
		201~300	1,000				
		100~200	500			A × 0.3 ×(1/n-1)	
	대학교재급 저서, 전문교양서적	100	500				
	문학작품 (중·단편소설,드라마,평론)	50	100				
	문학작품 (시·수필·꽁트,아동문학)	20	50				
유의 사항	■ 전문학술저서 또는 번역서(bo	ook chapte	논문모음)	의 경우에는 해	당가중치/Chapt	er수로 적용	

3. 공연·발표·대국·전시·설계·디자인

지원 분야	가중치 ^[주]]	기준금액 (A)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공 연 /	251 ~ 300	1,500			
발표 / 대국 전시 / 설계 / 디자인	200 ~ 250	1,000		지원금 하한액은 50,000원 임.	
	150	500	A×기여도 ^[주3]		
	100 ^[~2]	300		50,000 전 급.	
	100 ^[주2] 미만	200			

[주1]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 [별표2-1] 가중치를 말함.

[주2] 건축대학의 경우는 가중치 105를 기준으로 함.

[주3]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 [별표2-1] 기여도를 말하며, 해당 업적 평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문 및 저서의 기여도 기준을 고려하여 백분율로 정함.

영어논문 작성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자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총 금 액		지원금액		
영어논문작	업 체 명			
(교정)회사	담 당 자	연 락 처		
논 문 명				
교정 및 논문작성 의뢰 예정기간		201 ~ 201		
	학술지명			
게재예정 학술지	등재유형	SCI/SCIE() SSCI() A&HCI()		
	등재예정일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영어논문 작성회사(교내 회화전담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논문 1부 2. 영수증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